

가칭 가정폭력방지법 안

작성자 : 변호사 이 찬 진

변호사 이 종 결

제1장 총 칙(제1조 - 제3조)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3장 보호시설

제4장 벌 칙

제5장 부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법은 가정폭력의 예방 및 관련 당사자들의 치료, 지원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보호,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가정폭력방지에 관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국가가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와 치료 및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의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가정의 보호 및 유지 책임

1항 국가와 국민은 건전한 가정과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상담, 폭력발생 시의 피해자에 대한 피난처와 위기개입 및 지원서비스의 제공, 폭력행위자에 대한 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한 가정폭력의 확대방지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등의 복지서비스 등 법적, 제도적 장치의 제공과 이에 수반되는 예산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 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자치단체이하의 행정기관 경찰관서에 해당 직제를 설치하고 전문공무원을 육성, 배치하여야 한다.
- 4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가정폭력상담소 의료기관등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자, 관련 공무원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시 관련 민간 시설 및 법인에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제 3 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 이라 함은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사이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형법상의 고의에 의한 범죄행위를 말한다.
2. 가족 또는 세대구성원 이라함은 다음과 같은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 가. 법률상 배우자 및 전배우자
 - 나. 사실혼 관계 및 그 관계에 있던 자
 - 다. 법률상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자

라. 계부·모자 관계에 있는 자

마. 기타 동거친족 관계에 있는 자

3. 가정보호처분이라함은 가정폭력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이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 심리, 결정하여 발부하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각종 처분을 말한다.

4. 피해자라 함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여 국가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사람을 말하고 폭력행위자라함은 제1호 소정의 행위자를 말한다.

제 조 가정보호위원회

제1항 가정보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조정 연구 심의하기 위하여 부에 중앙가정보호방지위원회를 특별시 광역시 시에 지방가정보호위원회를 각각 둘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가정보호위원회는 피해자의 보호 및 폭력행위자에 대한 조치등 가정폭력방지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경찰청 각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3 항 가정보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가정보호사건

제4조 가정보호사건의 범위

제1항 이 장에서 규율하는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사건 중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건으로 한다.

1. 경찰, 검찰, 또는 관할 법원에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고소, 고발 또는 신고가 접수되어 수사결과 가정폭력사건에 해당할 경우

2. 경찰 또는 검찰에서 수사결과 가정폭력사건으로 인정한 경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형사절차의 예에 의한다.

1. 가정보호 사건심리를 거쳐 가정보호사건담당판사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송치결정을 한 경우

2. 단기 5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계기된 각 형법상의 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포함한다.)를 3회 이상 아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그 처벌을 원하는 경우

제5조 관 할

제1항 가정보호사건의 관할은 폭력행위자의 행위자,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

제2항 가정보호사건은 가정법원 가사부 또는 지방법원 가사부 단독판사에 속한다.

제3항 가정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가사부단독판사가 행한다.

제6조 사건발생시의 응급조치

제1항 가정폭력사건에 관한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6시간 이내에 가정폭력

사건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법원 영장당직판사에게 이를 전송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가정폭력사건발생보고서에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하여야 할 사건개요, 폭력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참고인 등 증거관계, 사법경찰관의 의견 기타 인적사항 및 영장당직판사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발부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임시처분과 폭력행위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10일 이하의 구금명령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그 양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호 10일 이내의 2일 단위의 단계별 임시퇴거명령

제2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거리에서의 100미터 이내로의 접근금지명령

제3호 폭력행위자가 발부된 임시처분을 위반할 경우에 부가되는 10일 이하의 구금명령

제3항 가정폭력사건발생보고서를 접수한 영장당직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12시간 이내에 가정폭력사건발생보고서에 정하여진 각 호 소정의 임시처분명령을 발부하여 이를 관할 사법경찰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제4항 임시처분을 접수한 사법경찰관은 즉시 이를 폭력행위자에게 집행하고, 피해자 등에게 그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 조 보조인의 자격과 임무

제1항 가정폭력상담소장, 피해자보호시설의 장, 관련 의료기관의 장과 교육기관의 장 및 각 그 지정을 받은 종사원과 변호사,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보조인은 피해자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심신 미약자의 경우에는 독립하여 피해자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 조 사

관할 경찰서장은 고소, 고발 및 신고를 접수한 후 또는 가정보호사건 전달판사으로부터 조사를 명받은 후 30(?)일 이내에 당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하고 처분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담당 판사에게 이를 송치하여야 한다. 단, 폭력행위자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의견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소 환

제1항 기록을 송치받은 담당판사는 사건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기일을 지정하여 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및 기타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다.

제2항 담당판사는 심리기일 전에 폭력행위자 및 피해자로부터 제 조 각호 소정의 가정보호처분에 관한 의견을 포함하여 사건에 관한 처분의견을 제출받아야 한다.

제9조 동행영장의 발부 및 집행

제1항 폭력행위자 또는 피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행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단, 사법경찰관의 조사에 불응한 폭력행

위자의 경우 또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판사는 소환없이 폭력행위자에 대한 동행영장을 발할 수 있다.

제2항 동행영장에는 피동행자의 성명, 연령, 주거, 행위의 개요, 인치 또는 수용할 장소, 유효기간 및 그 기간 경과 후에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발부 연월일을 기재하고 담당판사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10조 긴급(격리)처분

제1항 담당 판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여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긴급(격리)처분을 할 수 있다.

1. 폭력행위자를 격리할 수 있는 (적당한 ?) 시설에 위탁하는 것
2. 병원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는 것
3. 관할 구치소 및 유치장에 유치하는 것

제2항 위 제1항 중 1,2호의 위탁기간은 20일을, 3호의 위탁기간은 1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3항 가사부판사는 제1항 제1호, 제2호의 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수탁자에게 폭력행위자 감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보호자 또는 수탁자의 신분에 관하여는 폭력행위자에 대한 감호기간 중 공무원으로 본다.

제4항 제1항 1,2호 소정의 수탁기관 또는 요양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가사부판사는 제1항 각호의 결정을 한 때에는 가사부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 교도소 및 구치소 소속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6항 가사부판사는 제1항의 조치를 언제든지 결정으로써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단, 10일 이하로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가정폭력사건 심리에 필요한 사항은 가사소송법 제 조 내지 제 조를 준용한다.

제12조 불개시결정

담당판사는 폭력행위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사건의 심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심리를 개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폭력행위자에 대한 지명수배를 명하여야 한다.

제13조 불처분 결정

제1항 담당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결정을 폭력행위자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 담당판사는 제1항 전문 후단의 결정을 할 경우에 60일 이내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사회봉사명령을 부가할 수 있다.

제14조 보호처분의 종류

제1항 금지명령

가. 금지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접근 금지명령

폭력행위자의 피해자 거주 가택출입, 동거, 대면, 통신 기타 이에 상당한 행위를 금하는 명령

2. 양육 금지 및 위탁명령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자 부모의 일방 또는 쌍방에 대한 양육권 금지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3의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일시 양육위탁하는 명령

3. 부동산 또는 동산에 대한 처분금지명령(?)

제2항 금전지급명령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양료 지급명령

폭력행위자가 부양의무자인 경우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상당한 범위의 부양료 지급명령

2. 손해배상 및 보상명령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에 대한 재산상의 손해 및 위자료와 피해자의 이주시에 소요되는 비용 등의 지급명령

제3항 상담 및 수강 명령

가정폭력전문상담소,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른 기관 등에 의한 50시간 이하의 상담 및 수강에 관한 명령

제4항 사회봉사명령

사회복지사업법 소정의 사회복지시설 등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시설에서 100시간 이하의 노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명령

제5항 시설위탁명령

폭력행위자를 구타자에 관한 치료 프로그램이 설치된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따른 수탁기관 또는 요양기관에 60일 이하의 범위내에서 감호
를 위탁하는 명령

제15조 피해자의 절차 참여권

제1항 피해자는 심리에 관하여 제14조 각항 각호의 처분중 1 또는 2이상의 처분
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담당판사는 심리기간 중 피해자에게 위 각항제14조 소정의 보호처분을 신
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처분의 결정

제1항 담당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
으로써 전 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2 이상의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제2항 제14조 제2호, 제6호 결정에 관하여는 폭력행위자에게 피해자, 수탁시
설에 대한 가납명령을 부가하여야 한다.

제3항 제14조 제2항 각호의 처분은 피해자 및 그 보조인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결정한다.

16-1 결정의 집행

제1항 제14조 제2항, 제6항에 관한 가납명령은 민사소송법 제 2 조 소정의 집행력있는 정본으로 본다.

제2항 제14조 제3, 4, 5항 소정의 결정에 관하여 당해 교육기관 또는 수탁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폭력행위자의 명령이행상황에 대하여 이를 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절 항 고

제17 조 항 고

제1항 제6조 제2항의 처분, 제10조의 긴급(격리)처분, 제12, 13, 16조의 각 처분의 결정이 그 결정에 ----- 때에는 폭력행위자 및 그 대리인, 피해자 및 그 보조인은 ---- 할 수 있다.

제17조 - 21조 까지 소년법 제43조 내지 47조의 규정을 삽입할 것

제22조 검찰송치

담당판사는 심리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가정보호처분에 적당하지 아니하여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폭력행위자가 제14조 제1, 3, 4, 5호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의

집행을 중지하고 위 사건을 당해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

제 장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제 조 상담소의 설치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 상담소의 설치기준과 신고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의 신고를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2.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거나 가정폭력피해시설로 인도하는 일
3. 피해자와 독립하여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폭력행위자에 대하여 이법에 의한 사법처리절차가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협조하는 일
4.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를 사법경찰관리등으로부터 인도 받는 일
5.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를 홍보하는 일
6. 기타 가정폭력 행위 및 피해에 관하여 조사 연구하는 일

제 조 보호시설의 설치

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3항 보호시설의 설치기준 및 허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 조 보호시설의 업무

제1항 보호시설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제 조의 각호의 일
2. 피해자를 일시 보호하는 일
3.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사회적 자립을 도우는 일
4. 기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제2항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보호시설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 제 각호로 인한 전부 또는 일부의 비용을 폭력행위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절차는 국세기본법의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 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휴지 또는 폐지

제 조 또는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시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 조 감독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조 허가의 취소등

시도지사는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한 때에 또는 조사 검사를 거부 하거나 기피한 때

제 조 경비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 조 제 항 또는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 조 비밀엄수의 의무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서 제 조의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행하던 자가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조 유사명칭사용금지

이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 아니면 가정폭력상담소 또는 가정폭력보호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 조 의료보호

제1항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치료를 위한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병원 또는 보건소는 같은법 같은조 제2항 업무를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도 행한다.

제2항 이법에 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독립하여 제1항의 의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 제1,2항의 경우 폭력행위자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상할 수 있다. 그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세기본법의 체납절차의 예에 의한다.

제 조 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별 칙

제23조 사법경찰관리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6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4조 소환의 불응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25조 폭력행위자가 이 법에서 정한 각종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1. 이 법은 1997. 1. 1.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가정폭력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